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1999. 12. 24.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사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장의 일반직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별정직렬에 대해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일반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동장을 별정직에서 제외(안 제2조)
- 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업무성질이 같은 직위에도 전보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별정직렬에 대해 근무상한 연령을 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단서규정)

3. 관계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로 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별정직의 비서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u>공무원중 동장을 제외</u> <u>한 지방별정직공무원</u>(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③(생략)</p> <p>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u>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u>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②(생략)</p>	<p>제2조(적용범위) ①----- -----<u>지방별정직공무원</u> ----- ----- ②·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전보)----- -----<u>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u> <u>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u> ----- ----- -----</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 <u>다만, 구청장이 임명한 비서요원은</u>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현행과 같음)</p>